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공동지도교수제 운영지침

1. 공동지도교수 제도란 연구주제가 복합적이거나 보다 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2인의 지도교수를 위촉하는 것으로 이 때 지도교수는 "책임지도교수" 와 "공동지도교수"로 구분한다.

2. 위촉방법

- ① 공동지도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지도교수, 공동지도교수, 소속 학과장의 허가를 거쳐 공동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정해진 기간내에 일반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.
- ② 성심대학원장은 공동지도교수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지도교수로 승인할 수 있다. 단, 논문지도비는 책임지도교수에게만 지급한다.
- ③ 공동지도교수 자격 및 기타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도교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3. 논문심사 관련사항

- ①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심사위원은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한다.
- ② 박사과정 및 석·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논문심사위원은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으로 한다.
- ③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(박사과정 및 석.박사통합과정만 해당)는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,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한다.

성심대학원장

